

---

# 낙시산업 육성 · 발전방향

- 제1차 낙시진흥기본계획(2014년~2018년) -

---



2013. 12.

해 양 수 산 부  
수산자원정책과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 배경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1  |
| II. 국내 닙시 산업 현황 .....                | 4  |
| 1. 서비스산업 현황 .....                    | 4  |
| 2. 닙시 도구 제조·수출입·유통업 현황 .....         | 6  |
| III. 닙시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.....            | 8  |
| IV. 닙시산업 육성·발전 방향 .....              | 9  |
| V. 중점 추진 과제 .....                    | 10 |
| 분야1. 닙시산업의 안정적인 법·제도적 기반 구축 .....    | 10 |
| 분야2. 자원·환경·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닙시문화 정착 ..... | 16 |
| 분야3. 명품 닙시공간 구축을 통한 어촌소득 기반 창출 ..... | 22 |
| 분야4. 수출 진흥·관광산업화를 통한 닙시산업 육성 .....   | 30 |
| VI. 기대효과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33 |
| VII. 중장기 투자 계획 .....                 | 34 |
| VIII. 실천 계획(Action Plan) .....       | 35 |

## I. 추진 배경

◆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낚시 산업·서비스의 선진화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등 지속가능한 낚시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- 낚시인 - 산업계의 실천 과제 제시

-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·레저생활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 지속 상승
  - 소득 수준 향상\*, 여가기회 증대\*\* 등으로 여가·레저 활동에 대한 욕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
    - \* 1인당 GDP : ('00) 11,292달러 → ('10) 20,562 → ('20p) 37,885~45,000
    - \*\* ('04) 주5일 근무제 도입 → ('11) 주5일제 전면 시행 → ('12) 주5일 수업 시행 → ('14) 대체휴일제 도입
  -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'힐링, 웰빙' 트렌드에 따라 정신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레저활동으로서 낚시 부각 가능
    - \* 1회 출조시 낚시를 통해 얻는 만족감(소비자잉여)은 각각 바다낚시 25만원, 민물낚시 32만원('05년 기준)으로 추정되며, 이는 정신적인 만족감과 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·동료애를 포함
  - 하지만 국민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낚시 서비스 및 산업은 여전히 발전 지체
- 또한,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, 수산자원 남획,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확산
  - (환경) 낚시 과정에서의 납추 유실과 낚싯줄·미끼 등으로 인해 낚시터 수질과 인근 지역 오염 심화
    - \* 유실된 납추의 위험성 제기('12.8 KBS 환경스페셜), 매년 낚시폐기물 8,000톤 발생
  - (자원) 수산자원 이용에 있어 낚시인과 어업인 간 갈등의 지속·확대로 인한 낚시 포획량 제한 필요
    - \* 낚시로 인한 포획량 : 매년 23만톤 수준(연근해·내수면 어획량의 20% 수준)
    - \* 매년 가을 충남 지역 주꾸미 낚시로 인해 낚시인과 어업인 간 갈등 발생

○ (안전) 낚시인과 낚시업 경영인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

\* '12년 낚시어선 사고 현황 : 선박사고 발생 71건, 사망·실종·부상 16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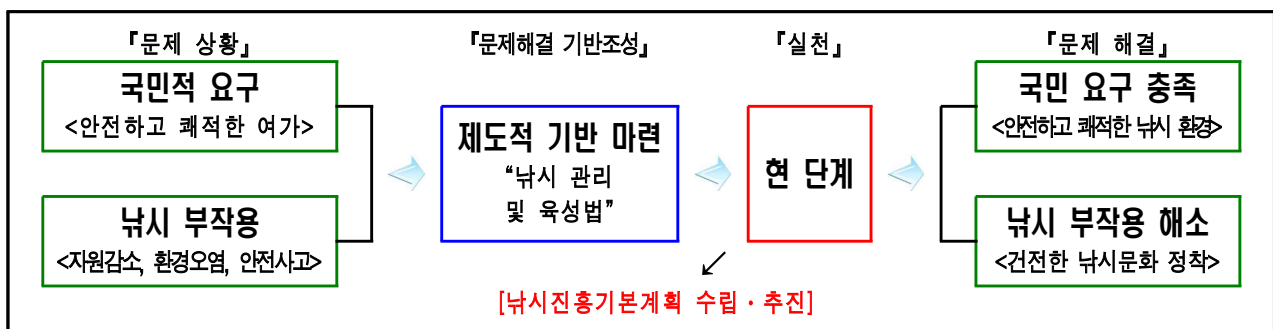
\* '12년 낚시터 사고 현황 : 사고 발생 25건, 사망 27명

□ 따라서,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(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(12.9.10 시행)」) 마련

○ 낚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낚시자원, 환경·생태, 안전, 교육, 홍보, 새로운 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인 낚시진흥기본계획\* 마련 필요

\*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4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하며,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수산업과의 연계 방안, 수산자원의 조성·보호, 낚시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

※ <참고 1> 현 상황의 분석



※ <참고 2> 낚시제도 도입 관련 주요 사항

- 1990년대는 낚시는 주로 환경보호(수질개선)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나, 국민정서적 문제, 공감대 미확보로 제도화에 실패
- 2000년대는 낚시면허제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나, 낚시단체의 반대 등으로 낚시 관련 법률 제정이 계속 지연
- 2008년에 낚시 관련 법률 마련을 위한 논의를 적극 추진, 현행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정·시행(2012.9.10)
  -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 체계화, 낚시제한기준 설정, 유해 낚시도구 금지, 낚시 안전관리 의무화, 낚시터 환경개선 등

※ 다만, 낚시면허제·낚시부담금 등의 제도는 미반영

<참고> 정책수요자 현황

■ (낙시인) 2013년 기준 국내 낙시 향유 인구는 약 700만명 수준으로 추정

● 전수 조사 등 객관적 통계 자료가 없어 '90년대 이래 민간의 추정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중

\* 기존의 낙시인구 추정치에 따른 예측(인구증가율 미고려)

(단위: 만명)

|       | 1990          | 1995         | 2000         | 2005          | 2010         | 2013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낙시 인구 | 325<br>(한국갤럽) | 400<br>(환경부) | 500<br>(해수부) | 573<br>(한국갤럽) | 652<br>(세종대) | 705<br>(예측) |

● '05년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하여, 남성이 440만명으로 76%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년에 5 ~ 6회 이하로 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(80%)

\* 성별 낙시 인구 및 낙시 횟수

(단위 : 천명)

| 구 분 | 계     | 잠재 낙시 인구 |          | 일반 낙시 인구 |          | 전문 낙시 인구  |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|       | 1년, 1-2회 | 1년, 3-4회 | 1년, 5-6회 | 한달, 1-2회 | 일주일, 1-2회 | 일주일, 3-4회 이상 |
| 계   | 5,736 | 2,144    | 1,082    | 1,311    | 787      | 312       | 100          |
| 남 자 | 4,393 | 1,403    | 833      | 1,096    | 700      | 281       | 80           |
| 여 자 | 1,343 | 741      | 249      | 215      | 87       | 31        | 20           |

■ (단체) 정부·지자체 등록 사단법인, 미등록 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이 활발히 운영 중

● 낙시 관련 사단법인 현황(중앙정부 등록 사단법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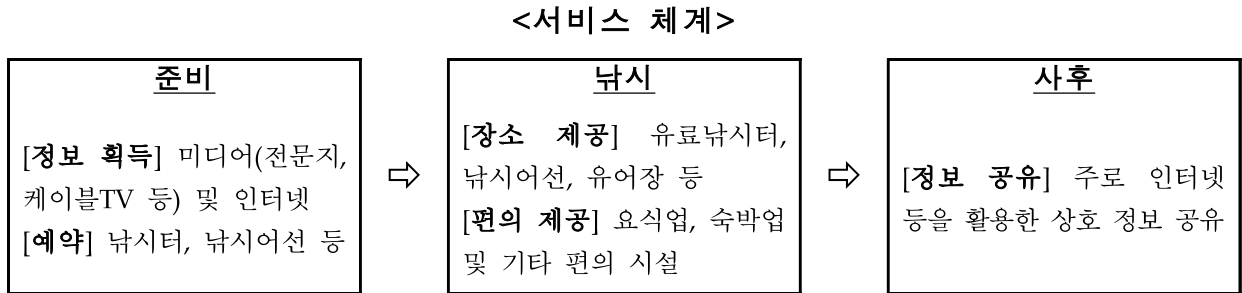
| 명 칭               | 설립일       | 목적 및 주요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회원수             | 등록 부처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한국낙시연합            | '81.02.05 | · 낙시터 환경보호 및 건전한 낙시풍토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| 310             | 해양수산부       |
| 전남여수낙시어선협회        | '05.05.27 | · 낙시어선의 질서 및 권익보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한국낙시어선협회          | '02.10.29 | · 낙시어선업의 기술개발 및 안전사고예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| 600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한국낙시업중앙회          | '88.02.01 | · 낙시터경영자 간 상호협력 및 우호증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50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한국기조연맹            | '10.06.17 | · 낙시동호인의 기술향상 및 권익 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86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한국프로낙시연맹          | '10.10.28 | · 건전한 낙시 문화 정착 및 낙시 관련 산업 발전                     | 622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한국낙시단체총연합회        | '13.07.01 | · 4개 낙시단체(음영처리)의 직능별 통합 단체                       | 852             | 환경부         |
| 한국생태보전낙시협회        | '06.05.19 | · 생태교란종 퇴치 등 토종 생태계 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,000          |             |
| 한국낙시진흥회           | '89.03.17 | · 스포츠레저로서 낙시의 위상 정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0             | 문화체육<br>관광부 |
| 국민생활체육<br>전국낙시연합회 | '01.09.07 | ·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원단체 중 하나<br>· 낙시인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도모 | 14개 지부<br>2개 단체 |             |
| 한국낙시산업협회          | '09.04.07 | · 업체 상호 간 우호증진과 유통질서 확립                          | 72              | 산업통상<br>자원부 |

\* 이 외 통영낙시연합 등 지자체 등록 사단법인, 한국스포츠피싱협회 등 미등록 단체 및 동호회, 인터넷 기반 친목단체 등 다양한 단체 존재

## II. 국내 낚시 산업 현황

### 1. 서비스산업 현황

□ 낚시 관련 서비스를 정보·장소 또는 기타 편의 제공 서비스로 분류



□ (정보) 전문지 및 TV,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 획득

- (월간지) 낚시춘추 등 6개 전문지\*가 월간 잡지 형식으로 발행 중
  - \* 월간낚시21, 월간붕어, 루어앤플라이, 바다낚시, 피싱리더, 낚시춘추(월 5,000~30,000부 수준)
- (TV) 케이블TV 활성화와 더불어 전문 취미·여가 정보 제공 채널로 성장
  - \* FTV : 개국('02. 3. 4), 시청률 0.05% / FS-TV : 개국('01. 6. 1), 시청률 불명
- (인터넷)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과 연계되었으며, 정보 원천으로서의 비중 확대
  - \* 국내 주요 검색포털 사이트 등록 기준 1,700여개의 관련 홈페이지 존재

□ (장소) 낚시 장소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및 영업은 특정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장소·방법에 의해서만 가능

\* 국내 낚시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현황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관련 법령                     | 제도    | 현황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바다<br>바닷가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어장  |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(수산업법) | 지정    | 181개소(2013, 체험어장 포함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낚시터  |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             | 허가    | 22개소(2013)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낚시어선 |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             | 신고    | 4,051척(2013)         |
| 내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낚시터  |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             | 허가·등록 | 670개소(2013)          |
| 미신고 낚시터 : 567개소(한국낚시업중앙회 추정, 2011)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- 안전·편의 시설 설치, 어족자원 관리, 낚시 장소 안내(낚시어선) 등의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요금 징수

\* 수익 현황 : 내수면낚시터(개소 당 연간 120백만원, 낚시업중앙회 추정) / 유어장(개소 당 연간 33백만원, '12년) / 낚시어선(척 당 연간 23백만원, '12년)

- 그 밖에 강·계곡·저수지·갯바위·방과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낚시가 가능하며 국내 낚시 수요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

- 원칙적으로 모든 비관리·자연 낚시터\*에서의 자유로운 낚시 행위가 허용되나 일부 지역의 경우 수질 보호 등을 목적으로 낚시 행위 제한\*\*

\* 국내 내수면 면적 : 5,925km<sup>2</sup>으로 전체 국토면적(100,188km<sup>2</sup>) 대비 5.9% / 해안선 길이 13,055km / 도서 수 3,746개

\*\*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법령 및 현황

|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한 목적        | 제한 내용  | 현황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(환경부)            |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 | 낚시 행위 전면 금지<br>(시·군·구청장 지정)                    | 낚시금지구역 : 96개소<br>(2012년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낚시 행위 일부 제한<br>(시·군·구청장 지정)                    | 낚시제한구역 : 8개소<br>(2012년)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천법(국토교통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하천 오염 방지     | 떡밥 등 미끼 사용<br>(시·도지사 지정, 고시)                   | 낚시금지구역 지정 : 전국<br>11개소(2011년)                  |
| 항로표지법(해양수산부)                        | 항로표지 보호      | 항로표지에서<br>낚시행위 전면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,400개소(등대, 2013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(농림축산식품부) | 농업생산기반시설 보호  | 허가받지 않은<br>유어행위<br>(허가권자 : 지자체장)               | 2013년 현재 미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항만법(해양수산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만 질서 유지     | 허가받지 않은<br>유어행위<br>(허가권자 : 지자체장<br>및 해양수산부 장관) | 8개소(2012년, 부산 신항·<br>광양·인천·평택·울산·<br>목포·포항·마산) |

## □ (기타) 요식업, 숙박업 및 낚시와 관련된 지역 축제 등

- 1회 출조 시 평균 낚시 시간이 길어 요식업·숙박업 수요 상당
  - 일부 낚시터의 경우 방갈로·해상펜션 등을 설치하여 숙박 장소로 활용 중

- 최근 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차원에서 낚시를 주제로 하는 축제\* 증가

\* 2013년 전국 지자체 조사 결과 화천 산천어 축제 등 37개 지역 축제가 낚시를 주제로 이벤트 진행

## 2. 낚시 도구 제조·수출입·유통업 현황

□ (제조업) 낚싯대·줄·추 등 직접 관련 제품과 가방·의류 등 간접 관련 제품, 미끼·사료 등 생물 기반 제품을 포함

\* 참고) 낚시 관련 도구·제품 현황

| 구분    | 명칭    | 특징   | 가격대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|
|-------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직접 관련 | 낚싯대   | 민물·중층·바다·원투·짜낚시 등 다양한 종류                   | 1만원 ~ 180만원      | 고급 : 일본제품 |
|       | 받침대   | 여러 낚싯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보조                    | 4,000원 ~ 20만원    | 국산, 중국제품  |
|       | 낚싯줄   | 나일론사, 카본사, 합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000원 ~ 40,000원 | 주로 수입     |
|       | 낚시추   | 무쇠, 납, 세라믹, 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원 ~ 10,000원 | 전량 국내 제작  |
|       | 루어    | 웜, 미노우 등 물고기를 유인하는 제품                      | 1,000원 ~ 30,000원 |           |
|       | 릴     | 스피닝릴, 베이트릴, 수동·전동릴 등                       | 8,000원 ~ 130만원   | 고급 : 일본제품 |
|       | 찌     | 민물, 중층·내림, 전자, 바다찌 등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원 ~ 10만원    |           |
|       | 바늘    | 민물, 바다, 루어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원 ~ 7,000원  |           |
| 간접 관련 | 의류    | 낚시복 및 낚시조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양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| 가방    | 낚싯대, 기타 도구 보관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양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| 기타    | 구명복, 아이스박스, 의자, 파라솔, 모자, 어군탐지기, 집어등, 첨가제 등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미끼    | 떡밥    | 집어제 및 떡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00원 ~ 20,000원 | 국산 또는 일본  |
|       | 크릴 새우 | 미끼 또는 집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000원 ~ 5,000원  | kg 기준     |
|       | 기타    | 지렁이, 새우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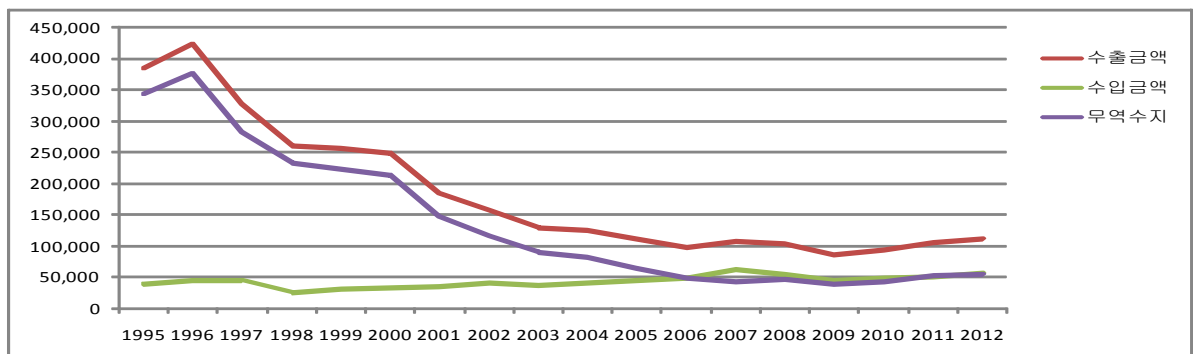
○ (시장규모) 2012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**2,722억원 수준\***으로 추정

\* 추정 근거 : 낚시 관련 용품 생산액(2011년 통계청, 2,079억원) + 수입액(2012년 관세청, 643억원)

- 통계청 기준 **57개 사업체**(10인 이상 사업장)가 낚시 도구 생산 중

□ (수출입) 수출은 '12년 112,831천\$(1,271억원)로 '96년(423,284천\$) 대비 73.3% 감소하였으나, 수입은 60,000천\$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 중

\* 낚시 도구 수출입 현황(관세청, 2012, HS9507)





□ (유통·판매) 주 판매 경로는 인터넷 쇼핑 또는 낚시터 인근 소매점

- 전문 도매의 경우 2000년 이후 기반이 붕괴되었으며, 생산업체의 직거래 또는 영업소에서 소매점\*으로 직접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

\* 국내 낚시 도구 판매업체 현황(소매, 한국낚시연합 추정자료)

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|
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|-------|
| 서울  | 부산  | 인천  | 경기  | 대전  | 대구  | 울산 | 강원    |
| 122 | 121 | 70  | 287 | 31  | 74  | 57 | 162   |
| 충남  | 충북  | 전북  | 전남  | 경북  | 경남  | 제주 | 계     |
| 323 | 93  | 111 | 344 | 277 | 276 | 94 | 2,507 |

※ 참고 : 국내 낚시산업 시장규모(추정)

■ 서비스 및 산업 시장 전체 규모 : **17,141억원**

■ 서비스산업 규모 : 13,386억원

- 정보제공 서비스 : 206억원
  - 전문지 : 117억원(추정 근거 : 월 평균 발행부수 × 판매단가 × 12월)
  - 케이블TV : 89억원(근거 : FTV, FS-TV 제출 자료)
  - 인터넷 :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 운영 외 수익 없음
- 장소 제공 서비스 : 2,694억원
  - 낚시터 : 1,555억원(추정 근거 : 1,296개소 × 120백만원)
  - 유어장 : 60억원(추정 근거 : 185개소 × 33백만원)
  - 낚시어선 : 1,079억원(추정 근거 : 4,708척 × 23백만원)
- 낚시 관련 축제 : 추정 곤란
- 기타 서비스 : 10,486억원
  - 추정 근거 : 573만명(낚시인) × 18.3회(연평균출조횟수) × 10,000원(1회 출조 시 식비)

■ 용품 산업 규모 : 3,629억원

- 낚시 관련 용품 : 2,722억원
  - 생산액 : 2,079억원(자료 : 2011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)
  - 수입액 : 643억원(자료 : 관세청 수입통계, 2012)
- 낚시터 시설물 : 907억원
  - 추정 근거 : 1,296개소 × 70백만원(평균 시설 설치비용, 낚시업중앙회 추정)
- 유통·판매 : 추정 곤란

■ 기타 : 126억원

- 낚시용 어류 양식 : 101억원
  - 자료 : 2012년 어업생산통계시스템 내수면 양식어업 생산액(붕어, 잉어, 향어에 한함)
- 낚시용 어류 수입 : 25억원
  - 자료 : 2012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통계(이식용 붕어, 잉어, 향어에 한함)

### Ⅲ. 낚시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

---

#### □ [정책]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미흡

- 그간 낚시를 자원·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·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규제 위주의 법 시행과 정책 추진
  - 이에 따른 낚시인과 낚시업계의 지속적인 반발과 소통 부재 문제점 노출

#### □ [기반] 자원감소, 환경오염 등 낚시 여건 지속 악화

- (자원) 섭식, 대형어종·특정어종 선호 등 자원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낚시문화, 수질오염·서식지 훼손 등으로 자원량이 감소하여 낚시 대상 지속 감소
- (환경) 낚시터 수질 및 인근 지역 오염 심화
  - \* 전국 낚시터의 오염물질 발생량은 8,000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며, 비관리·자연 낚시터를 포함할 경우 그 양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
- (여론) 자원남획·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낚시인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며, 주차·환경 등의 문제로 농어민과 잦은 갈등 발생
- (기타) 인구감소, 자전거·골프·캠핑 등 레저 활동 다양화 등 낚시 취미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
  - \* 현재도 특정연령층(40~50대 남성)이 60%이상을 차지하는 불균형적 인구구조

#### □ [산업·서비스] 내수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, 발전을 위한 투자 미약

- 수출경쟁력 약화, R&D 부족 등의 요인으로 과거 수출 중심 산업 구조가 내수 중심 산업구조로 변화
- 환경 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규제, 영세한 사업 규모 등으로 낚시터, 낚시어선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부족
- 낚시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낚시수요(어린이·여성) 확대 노력 미흡

## IV. 낚시산업 육성·발전 방향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비전</b> | <b>어촌과 함께 성장하고 국민을 힐링하는 낚시</b>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|           |  |
|-----------|--|
| <b>목표</b> | ❖ 쾌적한 낚시 환경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미래 세대도 즐길 수 있도록 조성·관리 |
|           | ❖ 낚시산업 육성·발전을 통해 어촌·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         |



| 정책과제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낚시산업의 안정적인 법·제도적 기반 구축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낚시 관련 법 정비</li> <li>▪ 낚시 관련 통계 구축</li> <li>▪ 낚시정책 거버넌스 구축</li> <li>▪ 낚시쿠폰제, 환경부담금 등 낚시관리제 도입 검토</li> </ul> |
| 자원·환경·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교육·홍보 프로그램 운영</li> <li>▪ 명예감시원 제도 활성화</li> <li>▪ 낚시포털(낚시누리) 활성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명품 낚시공간 구축을 통한 어촌소득 기반 창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낚시터·낚시어선 편의시설 구축 지원</li> <li>▪ 우수낚시터 제도 활성화</li> <li>▪ 낚시타운 조성</li> <li>▪ 낚시자원 조성·관리</li> </ul>            |
| 수출 진흥·관광산업화를 통한 낚시산업 육성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환경친화적 낚시도구 개발 및 인증제 도입</li> <li>▪ 제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(박람회 참가 지원)</li> <li>▪ 낚시 관련 관광산업 활성화</li> </ul>          |

## V. 중점 추진 과제

### 분야 1 낚시산업의 안정적인 법·제도적 기반 구축

#### 1-1. 낚시 관련 법 정비(낚시관리및육성법, 내수면어업법, 농어촌정비법)

#### □ 건전한 낚시문화 견인 및 낚시산업 발전을 위해 낚시 관련 법 정비 필요

\* 정비되어야 할 법령 주요 내용

| 관련 법        | 주요 내용   |
|-------------|---|
| 낚시 관리 및 육성법 | - (낚시제한기준)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·마릿수·체장·체중 및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방법·도구 및 시기        |
|             | - (유해 낚시도구 기준 및 미끼기준) 낚시도구에 함유될 수 없는 유해물질 및 허용 기준과 미끼의 종류별 특정 물질의 함량 기준 |
|             | - (낚시어선 안전기준 강화)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내수면어업법      | - 내수면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동력보트의 사용 활성화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어촌정비법      | - 낚시터 개발 활성화를 위해 수면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□ 주요 기준 마련 방안 및 계획

- (낚시제한기준 마련)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수산자원 파악(해수부, 지자체) 및 자원조사(수과원)를 통해 기준 마련 추진(마릿수 제한 포함)
  - \* 현재는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「수산자원관리법」의 제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  - 전국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수산자원 : 우리부(시행령)에서 기준 마련
  - 지역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수산자원 : 지자체(조례)에서 기준 마련
  - ※ 우선, 자원보호가 시급한 주꾸미는 부분적인 금어기(5.15~9.14) 설정 계획
- (유해 낚시도구 기준 및 미끼기준 보완)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기준 보완 및 친환경 낚시도구 인증 방안 마련

※ 연구용역 과제 개요

- 과제명 : 유해낚시도구 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
- 연구기관 :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- 연구비 / 연구기간 : 106백만원(낚시산업선진화사업) / '13.9 ~ '14.2 (6개월)

- (낙시어선 안전기준 강화) 증가하고 있는 낙시어선 사고를 예방·감소시키기 위해 낙시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등 안전 관련 기준 강화

※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개정사항

- 낙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(현재 : 필요시에만)
- 낙시어선 안전검사 및 유효기간 법제화(현재 : 시행규칙)
- ‘낙시승객 준수사항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관련 규정 법제화(현재 : 지자체 고시)

- (내수면어업법 개정) 유해어종인 배스 낙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내수면에서 동력 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

\* 현재는 지자체장의 허용이 있는 경우에만 내수면에서 동력보트를 이용한 낙시 가능(예 : 안동댐)

- (농어촌정비법 개정) 낙시터 개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의 수면임대기간을 연장(5→10년)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실시 후 법령 개정 추진(농식품부 협의 필요)

\*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른 낙시터업 허가기간은 10년,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 간 불일치 발생

※ 연구용역 과제 개요

- 과제명 : 낙시로 인한 수질오염 영향과 수질 관리방안 수립 연구
- 연구내용 : 낙시로 인한 수질오염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수면 임대 낙시터업의 수질기준을 제시하고, 이에 따른 수질 관리방안 마련
- 연구비 / 연구기간 : 35백만원(낙시산업선진화사업) / '14.3 ~ '14.8(6개월)

□ 중장기 추진계획

| 구 분           | 연차별 추진계획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|
|               | 2014                | 2015           | 2016 | 2017 | 2018 | 계     |   |
| 낙시제한기준        | 자원조사 실시 및 기준 마련(상시)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| - |
| 유해낙시도구 및 미끼기준 | 연구용역 및 법령개정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 |   |
| 낙시어선 안전기준     | 법령 개정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 |   |
| 내수면 어업법 개정    | 개정의견제출 및 법령 개정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 |   |
| 농어촌 정비법 개정    | 연구용역 (35백만원)        | 개정의견제출 및 법령 개정 | -    | -    | -    | 35백만원 |   |

## 1-2. 낚시 관련 통계 구축

### □ 통계 구축 필요성

- 현재, 우리나라에는 낚시 관련 통계 구축이 미비한 상황
  - 체계화된 통계 구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, 다양한 루트\*를 통해 통계 자료 수집
- \* 지자체 제출(낚시터, 낚시어선 관련), 통계청 통계 활용(낚시도구 제조 및 수출입), 연구용역(낚시인구 등 전반적인 낚시실태 조사) 등을 통해 통계 자료 수집
- 정책 수립의 기반은 정확한 통계 구축에서 시작되며, 통계의 정확성은 통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의 신뢰성과도 밀접하게 연관
  - 따라서, 낚시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해 낚시 관련 통계 구축 시급

### □ 해외 사례

- (일본) 어업센서스(5년 단위)의 유어채포량조사보고서와 레저백서 발간
- (미국·유럽) 낚시면허제를 통해 낚시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활용

### □ 통계 구축 방안 및 계획

- 구축 방안 :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의 통계 구축 시스템을 보완
  - (기초 통계조사) 낚시진흥기본계획(5년 단위)과 연계하여 유어낚시 센서스를 실시하고, 필요시에는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통계 기반 마련
- \* 현재, 어촌어향협회와 한국리서치를 통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 중
  - ※ 기초 통계조사 항목
    - 낚시인구 : 유형별(바다, 민물), 성별, 지역별, 연령별, 출조일수 등
    - 주요 어종별 조획량, 출조경비, 연간 조획량, 소비자잉여(사회후생) 등
- (지자체 협조) 바다 및 민물로 구분하여 1년 단위로 통계를 작성 하되,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도 병행
- \* (현재) 낚시터 및 낚시어선 허가·등록·신고건수 및 이용객·이용금액 → (향후) 계절별 이용객 및 수산자원 포획량 등 추가
- (낚시도구산업) 낚시산업계의 협조를 통해 낚시도구 전반에 대한 제조·유통·수출입에 관련한 통계 구축

### 1-3. 낚시정책 거버넌스 구축

#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시행(12.9.10)과 이에 따른 낚시산업의 본격적인 관리·육성으로 새로운 업무 추가 발생
  - 관리 업무 : 낚시제한기준·유해낚시도구 기준·낚시터 시설기준 등
  - 육성 업무 : 낚시업자 전문교육, 우수낚시터 지정, 명예감시원 운영 등
- 따라서, 정부의 낚시 담당 인력(유어제 2명) 부족 및 민간 주도의 낚시산업 발전 필요성 대두 등을 고려하여 낚시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검토 필요
  - 또한, 낚시 관련 산업 육성과 함께 농어촌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 목적 실현 고려

#### □ 거버넌스 구축 방안

- 정부(해수부, 지자체, 해경), 공공기관(어촌어항협회, 선박안전기술공단, 수산자원관리공단) 및 민간기관(낚시단체) 간 업무 분담 추진

#### < 낚시 관련 기관 역할 >

| 구분       | 역할  |
|----------|---|
| 해양수산부    | ○ 낚시 관련 업무 총괄   |
| 지자체      | ○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실시 / ○ 낚시 현장 단속 업무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양경찰청    | ○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단속 업무   |
| 어촌어항협회   | ○ 낚시 관련 사업 통합적 관리·운영 / ○ 낚시포털 운영<br>○ 낚시업자 교육업무 지원 / ○ 우수낚시터 지정 업무 지원 |
| 선박안전기술공단 | ○ 낚시터·낚시어선 안전검사 / ○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시행<br>○ 낚시 관련 법령 정비 지원                |
| 수산자원관리공단 | ○ 낚시용 수산자원 방류<br>○ 바다낚시터 및 유어장 등 친수공간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낚시단체     | ○ 낚시대회·낚시박람회 등 홍보사업<br>○ 낚시터업자 전문교육 실시 / ○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|

- 향후, 유어정책과 신설을 통해 낚시, 체험어장 뿐만 아니라 스킨스쿠버, 관상어 등 “즐기는 어업”에 관련된 기획·관리·육성 총괄 필요

## 1-4. 낚시쿠폰제, 환경부담금 등 낚시관리제 도입 검토

### ※ 낚시 관련 장관님 지시사항(13.9.16 확대간부회의)

- 해양환경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낚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, 중장기적으로 낚시 면허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

### □ 낚시관리제 도입 검토배경

- 공유자원인 수산자원 이용에 대하여 수익자인 낚시인들의 비용 부담을 통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 및 공평성 달성
  -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낚시인 비용 부담 방안으로 낚시면허제 (Recreational Fishing License), 부담금 조성 등을 활용 중
  - \* 참고) 낚시면허제와 부담금 조성 방안 비교

| 구 분  | 낚시 면허제   | 유어 부담금(기금제)  |
|------|--|--|
| 주요내용 | 낚시허가증(쿠폰)을 판매하거나 시험 등을 통해 낚시 라이선스를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| 낚시터, 낚시어선 이용금 또는 낚시도구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조성           |
| 장 점  | 환경오염예방,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강력한 효과를 보임                    | 낚시터업자, 용품업체, 낚시인 등 수산자원 이용을 통해 수익을 얻는 관계인들에게 고르게 비용 부담 |
| 단 점  | ①레저행위인 낚시에 대한 강력한 규제<br>②산업 및 서비스 위축 우려<br>③낚시인에게 모든 비용 전가 등 | ①사실상 낚시인에게 대다수의 비용 전가<br>②풍선효과 : 비관리, 무료 낚시터로 낚시인 집중   |
| 정책환경 | 70년대부터 추진하였던 정책이나 낚시인들의 반발이 심하여 좌절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7년 낚시발전조성금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검토단계에서 철회                     |
| 작동기제 |  |  |

- 제도 도입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도입 필요성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
  - 쿠폰제(허가증 판매)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,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간접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담금 조성도 검토



## □ 추진 계획

- 낚시관리제 도입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\* 실시('14년 중)
  - \* 낚시관리제 도입시 기금신설을 통해 관련 수익은 전액 낚시산업발전에 투자된다는 점을 강조
- 정책연구과제로 “낚시관리제 신설 필요성 및 추진방안” 연구 추진 ('14년 중 우리부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추진, 관련 예산 : 50백만원)
  -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낚시관리제 도입 여부 방안 검토('14년말)
- 낚시제한기준 개정을 통해 마릿수 제한(주꾸미, 갈치 등)부터 실시('14년말)

### < 1안 > 낚시관리제 도입을 하는 경우

- (쿠폰제)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('15년 중)

#### ※ 낚시 쿠폰제 시범사업 계획(안)

- 대상 지역 : 보트낚시를 하는 내수면 저수지(경남 합천시 합천호)
- 시행 방안 : 현재 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라 보트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저수지를 선정하여 보트낚시를 허용
  - 지역 어촌계가 입어료를 통해 낚시인들에게 비용부담을 시키고, 징수된 비용은 낚시 자원 방류 또는 안전시설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
  - 해당 저수지에서 잡을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, 마릿수 및 방법 등을 정하고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 여부 확인
- 효과 분석 : 어촌어향협회, 낚시단체와 함께 경제적 효과(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, 낚시인에 대한 설문조사 등) 분석 실시

- 제도 도입시에는 쿠폰 가격책정(무료 → 유료\*) 및 낚시장소(민물 → 바다)에 따른 구분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(시범사업 효과 분석 후 도입 확정시, '16년~)

\* 유료쿠폰인 경우 바우처(voucher)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유료화에 따른 소외계층 최소화

- (부담금) 부담금 신설 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 후 관련 법 개정 추진('15년~)
  - 수산발전기금에 별도계정 신설을 통해 낚시산업에 재투자 방안 등 검토

### < 2안 > 낚시관리제 도입을 하지 않는 경우

- 건전한 낚시문화·낚시제한기준 등에 관한 책자를 통해 교육을 받고 낚시신고를 한 경우에만 낚시가 가능한 낚시신고제 도입 추진('15년~)

**2-1. 교육 · 홍보 프로그램 운영(전문교육, 낚시대회, 낚시교실 등)**

**□ 교육 및 홍보 필요성**

- 왜곡된 낚시문화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, 환경오염, 안전사고 발생 등이 낚시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
  - 선진국 대부분 낚시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낚시면허제와 건전한 낚시문화 교육을 연계하거나 민간단체 등을 활용한 홍보 · 교육을 추진 중
-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의 공익적 목적 · 효과를 고려할 때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교육 및 홍보 확대 필요성 상당

**□ 추진 방안 : 대상에 따른 맞춤형 홍보 · 교육**

\* 대상별 교육 · 홍보 방안(안)

| 대 상                  | 정책수단   | 주요내용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낚시터업자<br>및<br>낚시어선업자 | ①의무 교육 | 법률에 의한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제재  | 2013년부터 시행<br>(법률 · 예산 기 반영) |
| 낚시 현장                | ②명예감시원 | 낚시 단체 임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하여 현장 낚시 행위, 문화 등을 지도·계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소요 경비, 활동비 등을 지원 | 2014년부터 시행<br>(법률 기 반영)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③간판 설치 | 건전한 낚시문화 홍보 간판을 내수면·해수면 주요 낚시 장소에 설치  | 2015년부터 시행                   |
| 청소년,<br>초심자          | ④체험 교육 | 청소년, 초심자 대상 체험 낚시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사업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3년부터 시행                   |
| 일반 낚시인               | ⑤낚시 포털 | 건전한 낚시문화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, 실천 방안 등에 대한 사이버 정보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3년부터 시행<br>(예산 기 반영)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⑥마어홍보  | 낚시 전문지, 케이블 TV 등의 건전한 낚시문화 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5년부터 시행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⑦낚시 대회 | 건전한 낚시문화 보급을 위해 매년 열리는 장관배 낚시대회 개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5년부터 시행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⑧낚시명인제 | 민간 차원의 낚시레벨 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낚시문화 전도사 역할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5년부터 시행                   |

- 정책수단③, ④, ⑥, ⑦, ⑧ : 예산 지원을 통한 신규 사업 반영 추진

□ 신규 사업(안) : 건전한 낚시문화 홍보 · 교육 지원

○ 사업 기간 : 2015년 ~ (계속)

○ 사업 내용

- 건전한 낚시문화 홍보 간판 설치 : 낚시인이 많이 찾는 내수면 · 해수면 비관리 낚시터에 건전한 낚시문화, 낚시제한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간판 설치
- 건전한 낚시문화 교육 지원 : 민간단체들이 낚시인 · 초심자 매너 교육, 체험교육 등을 추진할 경우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
- 건전한 낚시문화 홍보 지원 : 전문 월간지, 케이블 TV 등의 건전한 낚시문화 홍보 기사, 프로그램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
- 장관배 낚시대회 개최 지원 : 낚시 관련 단체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장관배 낚시대회의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
  - \* 특히, 배스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유해어종인 배스 퇴치 캠페인과 건전한 낚시문화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
  - \* 지자체 주관 낚시대회도 건전한 낚시문화 홍보와 연계하여 지원 추진
- 낚시명인제도 도입 : 민간 차원의 낚시레벨 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 하면서 낚시인들에게 Catch&Release, 안전문제, 낚시 매너 등에 대한 교육 및 안내 담당

○ 사업 예산 / 지원 조건 : 3억원(2015년) / 국고 100%

\* 낚시업자 전문교육 예산은 별도 확보 : ('14) 244백만원 → ('15~'18) 매년 300

□ 중장기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연차별 투자계획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| 2014    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계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| 244      | 600  | 600  | 600  | 600  | 2,644 |
| 낚시업자 전문교육 실시        | 244      | 300  | 300  | 300  | 300  | 1,444 |
| 건전한 낚시문화 교육 및 홍보 지원 | -        | 300  | 300  | 300  | 300  | 1,200 |

## 2-2. 명예감시원 제도 활성화

### □ 추진 배경

- 낚시 관련 규제에 대한 감시·감독,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·확산 등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곤란
  - 과도한 행정비용을 절감시키고 정책대상자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간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
- 이에 따라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서 낚시 단체의 임직원 등이 명예감시원으로서 감시·지도 및 계몽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
  - \*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(명예감시원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·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.

※ 참고 : 명예감시원 선정 대상, 위촉 비율 및 활동기간

- 선정 대상 : ①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- ② 낚시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
- ③ 낚시터의 안전관리, 수산자원의 보호, 그 밖의 낚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위촉 비율 : ① 낚시단체 및 비영리법인 임직원 40%
- ② 낚시터 주변지역 주민 25%
- ③ 일반국민 25%      ④ 해수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0%
- 활동 기간 : 2년으로 하고 재위촉 횟수는 4회로 제한(최장 10년까지 활동 가능)

### □ 실행 방안 : 낚시단체를 중심으로 활동 전개 및 활동 경비 예산 확보 추진

-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를 위탁기관으로 하여 명예감시원 교육,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임무 부여

- 추진 계획 : 명예감시원 운영계획 수립(13년 말) → 1기 명예감시원 선정(14년)

- 명예감시원 주요 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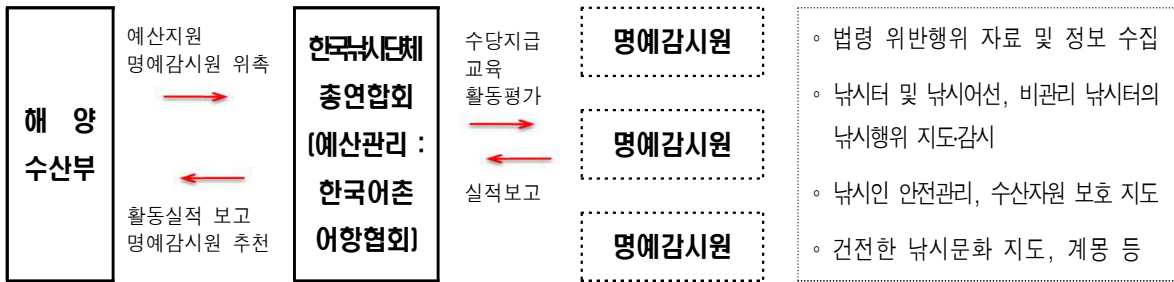
- ① 낚시터 시설·장비의 안전성과 수질·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지도
- ② 낚시터에서의 수질오염행위,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
- ③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
- ④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

○ 명예감시원 활동비용 지원 예산 확보 :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

- 신규 사업(안) : 낚시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

- 사업 기간 및 예산 : 2015년 ~ (계속) / 2억원
- 지원 조건 : 국고 100%(일반 수용비)
- 사업 수행 기관 :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
- 예산 지급 기관 : 한국어촌어항협회
- 지원 내용 : ① 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120백만원(4만원×연간30일×100명)  
② 교육 교재 및 기타 운영 경비 80백만원

○ 추진 체계



□ 중장기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|     | 연차별 투자계획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계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  |     | 2014    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|     | -        | 200  | 200  | 200  | 200  | 800 |
| 낚시 명예감시원<br>활동 지원 | 국 비 | -        | 200  | 200  | 200  | 200  | 800 |

## 2-3. 낚시포털(낚시누리, www.naksinuri.com) 활성화

### ※ 정부3.0 관련 VIP 말씀요지('13.6.19 정부3.0 비전선포식)

- 정부가 정부3.0을 국민 앞에 발표한 뜻은 먼저 공공기관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막혀있던 정보의 흐름을 뚫어서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

### □ 낚시정보종합포털 운영 활성화 추진

- 대국민 맞춤 낚시 관련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공식 창구 역할
- 추진 방안 : 정부 예산 사업으로 수행
  - \* 관련 예산 : '13년 200백만원(낚시산업선진화사업 - 낚시정보종합포털구축)
- 추진 실적 및 계획
  - ('13. 11월) 낚시정보종합포털 오픈과 함께 낚시 관련 법령 및 낚시터·낚시어선 관련 정보\* 제공
    - \*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라 허가·등록된 낚시터 및 신고된 낚시어선
  - ('14. 4월) 낚시정보종합 모바일 앱(Application) 구축
  - ('14. 12월) 낚시업자 전문교육 사이버 강의 서비스 실시(시범운영)
    - \* LMS(학습관리시스템)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현장교육 참여가 어려운 곳부터 부분시행
  - ('15년~) 포털 내용 보강(낚시터, 낚시어선 정보 등)

| 사업내용      | '12년~'13년 상반기 | '13년 하반기       | '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15년~'18년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낚시정보 종합포털 | ○ 낚시포털 구축     | ○ 낚시포털 오픈 및 홍보 | ○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시행<br>○ 모바일앱 구축 | ○ 지속적인 콘텐츠 보강 실시 |

### □ 중장기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| 연차별 투자계획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           | 2014    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계     |
| 합 계        | 160      | 300  | 300  | 300  | 300  | 1,360 |
| 낚시누리 운영 지원 | 160      | 300  | 300  | 300  | 300  | 1,360 |
| 국 비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|

## □ 낚시누리 홈페이지 현황



### ※ 참고 : 유사사업 검토(바다관광 포털사이트 관리 운영)

- 사업 목적 :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며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의견과 이익을 반영하여 어촌·어항·지역주민 등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

#### ◦ 사업 개요

- 사업 기간 / 지원 조건: 2003년 ~ 계속 / 국고 보조 100%(민간 경상 보조)
- 사업 예산 및 내용

| 구분      | 2003  | 2004 | 2005 | 2006 | 2007~2010 | 2011~2012 | 2013 |
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예산(백만원) | 189   | 352  | 401  | 437  | 매년 300    | 매년 450    | 660  |
| 사업내용    | ISP수립 | 1차구축 | 2차구축 | 3차구축 | 유지·보수     |           |      |

#### ◦ 사업 세부 추진 내용

- 사이트 명 : 바다여행(www.seantour.com)
- 이용 현황

| 회원 수               | 이용자 수(연간) | 정보제공자 수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5만 9천명(2013.9월말기준) | 120만명     | 36백명    |

- 주요 제공 콘텐츠

- ① 어촌관광의 볼거리, 즐길거리, 잠자리, 먹거리, 살거리
- ② 어촌체험마을, 바다축제, 해수욕장, 등대, 섬, 어항 등
- ③ 우수브랜드선정 수산물상품, 요리법, 수산물 관련 상식
- ④ 바다여행 추천 코스, 바다여행 사진교실 등

## 분야 3 명품 낚시공간 구축을 통한 어촌소득 기반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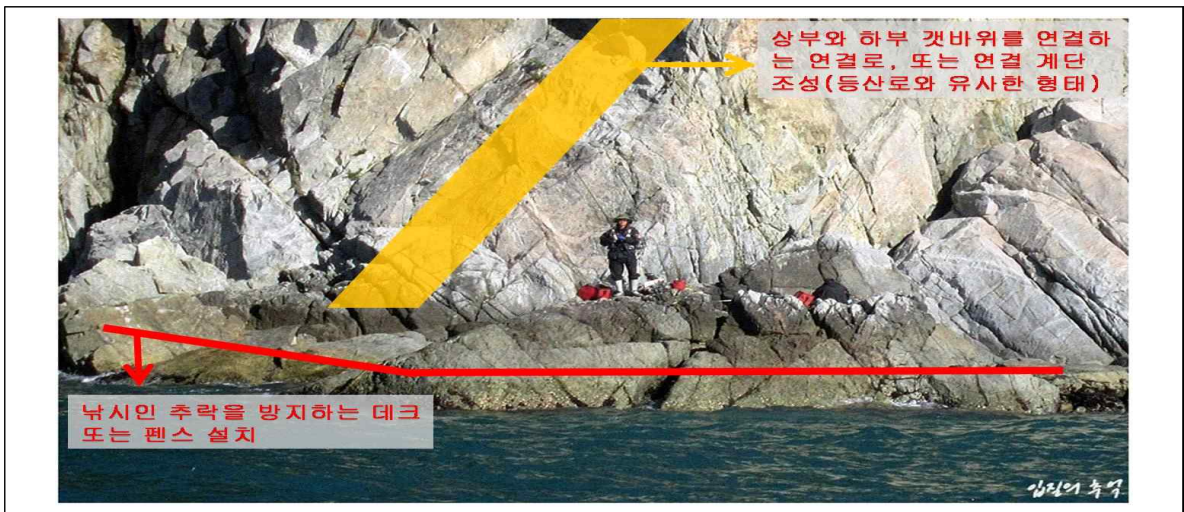
### 3-1. 낚시터·낚시어선 편의시설 구축 지원

#### □ 편의시설 구축 지원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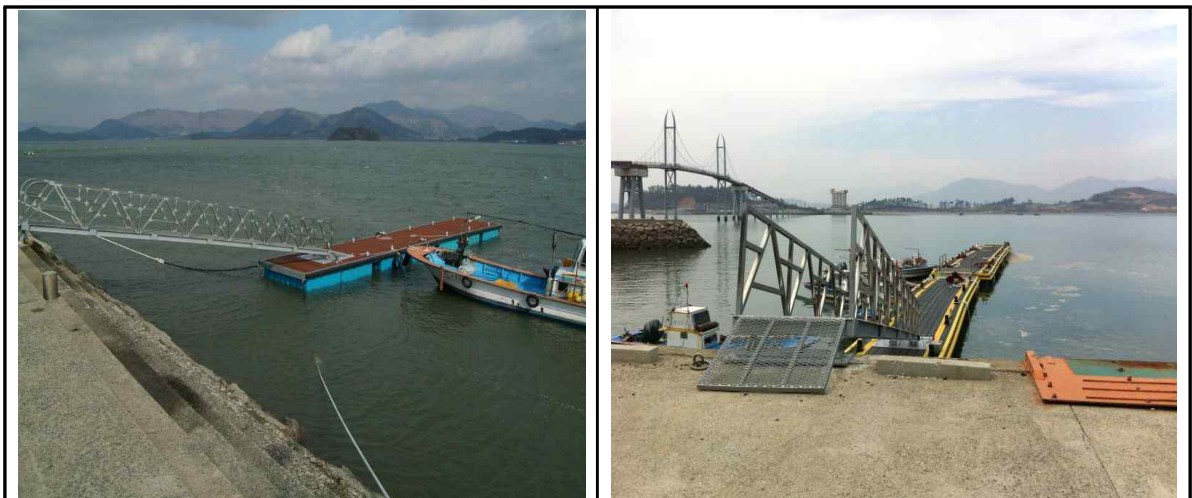
|       |   |
|-------|---|
| 배경    | 편의시설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낚시 수요 증가      |
| 기대 효과 | ①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,<br>② 어촌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 가능 |

#### □ 편의시설 구축 조감도

- 낚시터 안전·편의시설 구축(연결로, 안전펜스 설치)



- 낚시어선 출입항 안전·편의시설 구축(낚시어선 전용 잔교)





□ 실행 방안 : 신규 사업으로 '15년 예산 반영 추진

-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으로 반영
- 사업 개요(안)

- 사업 명칭 : 낚시 인프라 구축
- 사업 기간 : 2015년 ~ (계속)
- 사업 예산 : 10억원(2015년, 개소당 1억원×시범사업 10개소)
- 지원 조건 : 국비 50%, 지자체 50%

- 주요 사업 내용(안)

- 낚시터 안전·편의시설 구축 : 연결로 조성, 안전펜스, 주차장 등
- \* '09년도부터 실시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(화장실, 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)은 별도 예산 확보 추진 : ('14) 1,759백만원 → ('15~'18) 매년 2,000
- 낚시어선 출입항 안전·편의시설 구축 : 낚시어선 전용 잔교, 출입항 내 분뇨처리시설 등

□ 중장기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|     | 연차별 투자계획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| 2014     | 2015  | 2016  | 2017  | 2018  | 계      |
| 합 계          |     | 1,759    | 3,000 | 4,000 | 4,000 | 4,000 | 16,759 |
| 낚시 인프라 구축 지원 | 국 비 | -        | 500   | 1,000 | 1,000 | 1,000 | 3,500  |
|              | 지방비 | -        | 500   | 1,000 | 1,000 | 1,000 | 1,000  |
|              | 물 량 | -        | 10개소  | 20개소  | 20개소  | 20개소  | 70개소   |
|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  | 국 비 | 1,759    | 2,000 | 2,000 | 2,000 | 2,000 | 9,759  |

## 3-2. 우수낙시터 제도 활성화

### □ 추진 배경

- 낙시 저변 확대의 장애요인에 대해 일반인과 낙시업계(사업체) 모두 '낙시 편의시설 부족'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
  - 또한, '우수낙시터 인증제' 실시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낙시업계 모두 70% 이상 찬성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인정
  - \* 우리나라 낙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(2011, KMI)
- 이에 따라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서 허가·등록된 낙시터 중 기준에 부합하는 낙시터를 우수낙시터로 지정하고,
  - 예산의 범위에서 낙시터의 시설·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
  - \*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4조(우수낙시터의 지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나 제16조에 따라 낙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낙시터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낙시터를 우수낙시터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낙시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낙시터의 시설·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※ 참고 : 우수낙시터 지정기준

1. 홍보 및 자원 - 낙시터 관련 홍보실적, 어류 자원조성 관리방안, 낙시터 이용자 준수 사항 게시 여부, 도박낙시 등 금지행위 예방 홍보 등
2. 환경개선 - 수·저질 개선장비 보유 현황, 낙시터 시설물의 유지·보수 및 개선상태 등
3. 편의시설 - 화장실·세면대 등 위생 및 청결상태, 교통편의시설·접근성, 자연학습장·캠핑장 유무, 낙시입문 프로그램 운영 유무
4. 교육 관련 인원 - 응급조치 및 인명구자 자격자 배치, 낙시터 시설물의 자체 유지·보수가 가능한 인력 배치 등
5. 안전관리 - 소화기, 구급약품, 응급구조장비, 구명설비 및 비상연락망 게시 등
6. 사회기여도 - 낙시터 인근 지역 기여실적, 사회공헌활동 등
7. 자체규정 운영 - 주요사고 예방 대책, 배상청구처리 기준 마련, 낙시터 운영 규정 비치 등

□ 우수낙시터 조감도



□ 실행 방안 : 지정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확보 추진

-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한국낙시단체총연합회를 위탁기관으로 하여 우수낙시터 지정 접수,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 등을 진행
  - 추진 계획 : 우수낙시터 고시 마련 및 지정계획 수립('14년 초) → 우수낙시터 선정('14년 중)
- 우수낙시터 지원 예산 확보 :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
  - 신규 사업(안) : 우수낙시터 지원

|  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 기간 및 예산 : 2015년 ~ (계속) / 2억원</li> <li>◦ 지원 조건 : 국고 100%(일반 수용비)</li> <li>◦ 지원 내용 : ① 우수낙시터 지원 예산 180백만원(개소당 18백만원×10개소)<br/>② 우수낙시터 심의위원회 및 기타 운영 경비 20백만원</li> </ul> |
|---|

□ 중장기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|     | 연차별 투자계획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계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         |     | 2014    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    |
| 합 계      |     | -        | 200  | 200  | 200  | 200  | 800 |
| 우수낙시터 지원 | 국 비 | -        | 200  | 200  | 200  | 200  | 800 |

### 3-3. 낚시타운 조성

#### □ 추진 배경

- 현재 낚시 관련 편의시설이 낙후되고 분산되어 낚시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저조
  - 편의시설, 부대시설(숙박업소, 식당 등)의 부족과 접근성 취약, 타 지역에서의 낚시 관련 상품 구입 및 해당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 부족 문제 발생
- 또한, 낚시가 귀어·귀촌 활성화 측면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낚시인들을 어촌으로 이주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필요
  - 레저보트(수상레저기구)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낚시도 하고 영업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#### □ 낚시타운 조감도



□ 실행 방안 : 낚시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

○ 어촌어항협회를 통해 연구용역 실시 및 시범사업 추진

- 추진 계획 : 연구용역 실시('14년) → 시범사업 추진('15년~)

○ 복합 낚시타운 조성(안)

- 어촌의 배후지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 형태의 건물 조성을 통해 낚시 점포, 편의점, 식당 등의 편의시설과 함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상 가두리 낚시체험장, 해상펜션 등을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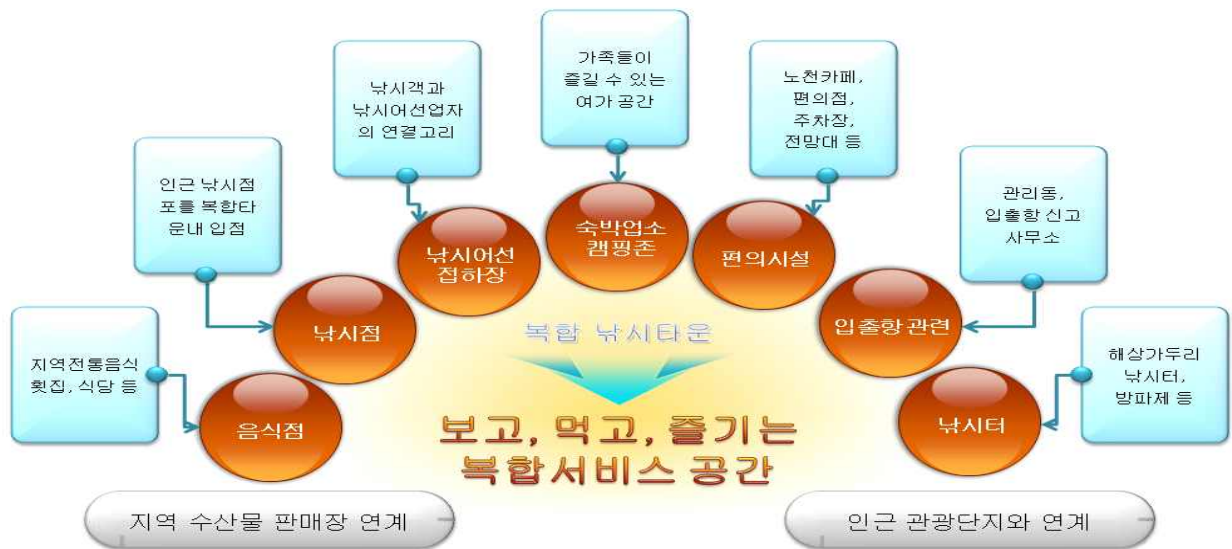
- 낚시백화점 : 1층 입출항신고소, 낚시점포 / 2층 회센터 / 3층 숙박업소

- 편의시설 : 낚시어선 접하장, 낚시용 레저보트 보관시설 등

- 체험시설 : 해상가두리 낚시체험장, 어린이 바다체험장

- 가족 여가시설 : 가족 캠핑촌, 해상펜션, 해상공원 등

※ 낚시타운 세부구상(안)



□ 중장기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| 연차별 투자계획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| 2014     | 2015  | 2015  | 2016  | 2017  | 계     |       |
| 합 계        | 50       | 1,000 | 2,000 | 2,000 | 2,000 | 7,050 |       |
| 낚시타운 조성 지원 | 국 비      | 50    | 500   | 1,000 | 1,000 | 1,000 | 3,550 |
|            | 지방비      | -     | 500   | 1,000 | 1,000 | 1,000 | 3,500 |

### 3-4. 낚시자원 조성·관리

#### □ 추진 배경

- 수질오염, 서식지훼손 등으로 낚시 대상 어족자원(특히 내수면)이 감소하여 낚시 활성화에 제약을 받는 상황
  - 많은 낚시인들이 낚시 산업 활성화의 제 1조건이 풍부한 어족 자원 확보임을 주장
- 낚시 대상 어족 자원 확충 방안

| 구 분         | 실행 방안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① 낚시자원 방류지원 |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활용 |
| ② 낚시 자원관리   | 낚시 휴식년제 활용      |

#### □ 낚시 자원 방류 지원 사업

- 현재, 자원조성 사업과 자율관리어업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종묘방류와 인공어초 투하 등의 자원조성시설 건립을 활용하여 낚시자원 조성·관리 가능
  - 낚시대상 어종에 대한 방류사업 확대 및 동 어종이 서식하기 적합한 어초 개발 추진

\* 참고)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(수산종묘관리사업 내 세부사업)

|  |
|--|
| ○ 사업 예산 및 회계 : 21,238백만원(2013년) / 광특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지원 조건 : 국비 70%, 지방비 30%  |
| ○ 사업대상 품종 : 65종(낚시대상어종인 조피볼락, 감성돔, 농어, 붕어 등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추진방향 : 낚시대상 어종 방류를 확대 하되 먹이사슬을 파괴시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성어(成魚, 10cm 이상) 방류는 금지 |

- 어촌계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감시감독 기능 발휘, 종묘방류사업 및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등에 참여

## □ 낚시 자원관리 사업

- 특정 지역(해역)에서의 계속적인 낚시행위로 인한 수산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므로, 휴식년제 도입을 통한 자원관리 추진

- \* 예시) 최근 가을에 주꾸미 낚시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로 봄에 어획되는 주꾸미의 어획량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('07년 6,828톤 → '09년 4,285톤 → '12년 3,406톤)

-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6조(낚시통제구역) 및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낚시행위의 제한)에 따라 지자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은 낚시통제구역·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 설정 가능

※ 참고 : 신안군 낚시휴식년제 사례

-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, 용·배수로 등 비관리 낚시터에서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안군 내 14개 읍·면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휴식년제로 운영 중('13.7.1부터 시행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)
  - 6개 권역에 대해 낚시행위를 1년 허용, 5년 금지(1개 권역씩 순환 허용)
  - 군 자체적으로 낚시금지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내수면 관리자를 선정하여 지도·단속반 운영하여 위반시 30~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

## □ 추진 계획

- (자원방류) 「수산종묘방류 증장기 발전방안\*」과 연계 추진하여 낚시대상 어종에 대한 방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 마련

- \* 수산종묘방류 사업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방류종묘인증제 도입, 방류사업 관리체계 구축, 자원조성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학적·효율적 종묘방류 방안 등

- (자원관리) 휴식년제를 통한 자원관리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('14년 상반기)

- 지자체, 낚시인,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낚시 휴식년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추진

4-1. 환경친화적 낚시도구 개발 및 인증제 도입

□ 추진 배경

- 바다 민물에서 낚시로 인한 떡밥, 낚추, 생활쓰레기 등의 발생은 심각한 수준
  - 매년 낚시폐기물 8,000톤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, 특히 수중에 유실되는 낚추는 낚시와 낚시인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
- 이에 따라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서는 낚추를 유해 낚시도구로 지정하여 제조·수입·판매·사용에 대한 단계적 금지 실시
  - 이와 함께 '13년부터 친환경 낚시도구 개발지원 사업\*을 실시하여 대체추 개발 지원 중(이차보전 방식으로 매년 예산 1억원 지원)
  - \* 대체추 생산 확대를 통해 편리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
- 하지만, 유해 낚시도구 기준 수립에 따라 시중의 낚시도구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

□ 실행 방안 : 친환경 낚시도구 인증제도 도입 및 홍보 추진

- 친환경 낚시도구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환경마크 부여 등 친환경 낚시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추진
  - \* 인증업무는 유해낚시도구 기준 관련 연구용역 및 물놀이기구·장난감 등의 공산품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에서 담당토록 함
  - ※ 참고 :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」 제5조 개정안

제5조(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(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그 낚시도구가 별표 1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와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- 또한, 낚시단체와 연계하여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환경친화적 낚시 대회 개최를 통해 낚시인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 지속적 홍보 추진



## 4-2. 제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(박람회 참가 지원)

### □ 국내 낚시 용품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

- (추진목표) '90년대 수준의 수출 실적('96년 약 4,656억원) 달성
- (추진방안) 2015년 신규 사업으로 “낚시산업 선진화” 사업 반영 추진

### □ 낚시용품발전지원 사업(안)

- 사업 기간 : 2015년 ~ (계속)
- 사업 내용 : 수출 및 국내 점유 확대를 위한 용품업체 활동 보조
  - 해외박람회 참관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자금 지원
  - 국내 박람회 개최 지원(해외 바이어 초청 전제) 등

\* 국내 낚시 용품 박람회 개최 실적

| 구 분  | 기간/장소           | 전시규모          | 바이어 수   | 비 고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2007 | 3.16-18 / aT센터  | 70업체 / 200부스  | 15,300명 | 주관 : 서울메세<br>후원 : 한국낚시<br>연합, 낚시산업<br>협회 등 |
| 2008 | 3.14-16 / aT센터  | 85업체 / 242부스  | 17,200명 |  |
| 2009 | 3.6-8 / SETEC   | 106업체 / 306부스 | 25,923명 |  |
| 2010 | 3.12-14 / SETEC | 125업체 / 350부스 | 25,359명 |  |
| 2011 | 3.11-13 / BEXCO | 132업체 / 357부스 | 30,811명 |  |
| 2012 | 3.9-11 / KINTEX | 120업체 / 380부스 | 28,066명 |  |
| 2013 | 3.8-10 / KINTEX | 130업체 / 350부스 | 30,000명 |  |

- 사업 예산 : 100백만원(해외박람회참가지원 50백만원, 국내박람회개최지원 50백만원)

\* 산출내역 : 10개소×10백만원×50% / 1식×100백만원×50%

- 지원 조건 : 국비 50%, 자담 50%

### □ 중장기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| 연차별 투자계획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          | 2014    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계   |
| 합 계       | -        | 200  | 200  | 200  | 200  | 800 |
| 낚시용품 발전지원 | 국 비      | -    | 100  | 100  | 100  | 400 |
|           | 자부담      | -    | 100  | 100  | 100  | 40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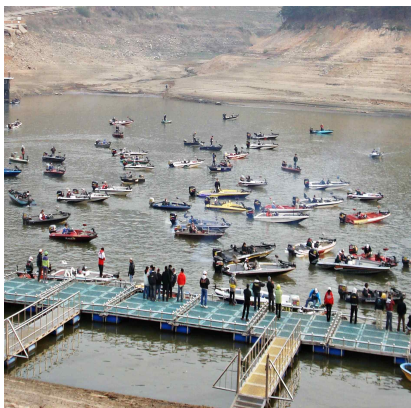
### 4-3. 낚시 관련 관광산업 활성화

#### □ 추진 배경

- 낚시의 특성상 1회 출조 시 평균 낚시 시간이 길어 **요식업·숙박업 수요**가 상당하며, **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**와도 연계
  - 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**낚시대회(전국 37개)**가 열리고 있으며, 특정 어종을 활용한 낚시 수요 증가로 **지역경제 활성화 효과** 발생
    - \* 매년 1월에 열리는 **화천 산천어 축제**의 직·간접적 경제효과는 **2,385억원** 규모로 추정
- 하지만, 아직까지 **홍보·마케팅을 활용한 낚시 관광객 유치**는 **미흡한 상황**
  - 낚시인 방문 시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**부정적 효과**(환경훼손, 자원 남획)에 초점을 맞추어 **행정 단속에 집중**하고 있음

#### □ 실행 방안 : 컨설팅 사업 추진

- **어촌어항협회를 중심으로** 지자체의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진행
  - 지자체별 낚시터(민물, 바다) 및 낚시어선 실정에 맞는 **홍보사업 방향**을 도출하고 마케팅 진행
  - 또한, **어촌체험마을 및 바다여행 사이트(www.seantour.com)**와 연계 추진
    - \* 컨설팅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
- ※ 참고 : 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낚시대회(**안동호 국제배스낚시대회 사례**)



- 한국배스낚시협회를 중심으로 안동호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회
  - 올해 16회째를 맞이하여 **1,575척의 보트와 2,925명의 낚시인**이 참석, 1인당 지출액(27만원)을 고려할 때 **최소 8억원의 경제효과**가 있는 것으로 보임
  - 안동호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트낚시를 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**희소성**을 활용하여 **루어낚시인들**에게 인기가 있으며,
  - **일본·중국의 낚시인들**도 안동호에서 낚시를 하는 것을 **최대 소원**으로 이야기하고, 동 대회와 유사한 대회도 개최 추진 중

## VI. 기대효과

- 자원·환경·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되고, 낚시산업이 국민레저활동으로 정착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어촌소득 증대 가능
  - Catch&Release를 통해 잡아서 먹는 즐거움보다는 손맛을 즐기며, 대체추를 사용하고 쓰레기는 되가져오는 캠페인을 통한 낚시문화 정착
  - 낚시가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어린이·여성이 함께 즐기는 가족 레저활동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
  - 낚시산업 발전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 되고,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확대

### 《낚시산업의 현재와 미래》

| 구 분           |          | 201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8년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낚시인           |          | 700만명<br>(40대 이상의<br>중·장년층 위주) | 700만명<br>(어린이·여성 등<br>가족 중심) |
| 낚시산업          | 산업규모     | 1.7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낚시터      | 692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개소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유어장      | 185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낚시어선     | 4,051척                         | 5,000척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신규 일자리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명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제조업 수출규모 | 1,271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| 2,000억원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어촌<br>소득 | 낚시터<br>(개소당)                   | 120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어장<br>(개소당)  |          | 33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낚시어선<br>(척 당) |          | 23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낚시문화          | 자원       | 섭식, 대형어종 선호                    | Catch&Release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환경       | 납추 사용,<br>쓰레기 무단 투기            | 대체추 사용,<br>쓰레기 되가져가기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안전       | 구명조끼 착용 거부                     | 구명조끼 상시착용                    |

## VII. 중장기 투자 계획

※ 중장기 투자계획은 예산당국과 별도 협의 필요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|   | 재원별 | 연차별 투자 계획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계      |
|---|---|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  |   |     | 2014      | 2015  | 2016  | 2017  | 2018  |        |
| 총 계   |   | 총 계 | 2,398     | 5,600 | 7,600 | 7,600 | 7,600 | 30,798 |
|   |   | 국 비 | 2,398     | 4,500 | 5,500 | 5,500 | 5,500 | 23,398 |
|   |   | 지방비 | 0         | 1,000 | 2,000 | 2,000 | 2,000 | 7,000  |
|   |   | 자부담 | 0         | 100   | 100   | 100   | 100   | 400    |
| [분야 1]<br>뉴시산업의<br>안정적인<br>법·제도적<br>기반 구축     | <과제1-1><br>뉴시 관련 법 정비                   | 소계  | 35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35     |
|   |   | 국비  | 35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  | 지방비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  | 자부담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<과제1-4><br>뉴시관리제 도입<br>검토               | 소계  | 50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50     |
|   |   | 국비  | 50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  | 지방비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  | 자부담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[분야 2]<br>자원·환경·<br>안전을 고려한<br>건전한 뉴시문화<br>정착 | <과제2-1><br>교육·홍보<br>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| 소계  | 244       | 600   | 600   | 600   | 600   | 2,644  |
|   |   | 국비  | 244       | 600   | 600   | 600   | 600   | 2,644  |
|   |   | 지방비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  | 자부담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<과제2-2><br>명예감시원 제도<br>활성화              | 소계  | -         | 200   | 200   | 200   | 200   | 800    |
|   |   | 국비  | -         | 200   | 200   | 200   | 200   | 800    |
|   |   | 지방비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  | 자부담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<과제2-3><br>뉴시포털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| 소계  | 160       | 300   | 300   | 300   | 300   | 1,360  |
|   |   | 국비  | 160       | 300   | 300   | 300   | 300   | 1,360  |
|   |   | 지방비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  | 자부담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[분야 3]<br>명품 뉴시공간<br>구축을 통한<br>여촌소득 기반<br>창출  | <과제3-1><br>뉴시터·뉴시어선<br>편의시설 구축 지원       | 소계  | 1,759     | 3,000 | 4,000 | 4,000 | 4,000 | 16,759 |
|   |   | 국비  | 1,759     | 2,500 | 3,000 | 3,000 | 3,000 | 13,259 |
|   |   | 지방비 | -         | 500   | 1,000 | 1,000 | 1,000 | 3,500  |
|   |   | 자부담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<과제3-2><br>우수뉴시터 제도<br>활성화              | 소계  | -         | 200   | 200   | 200   | 200   | 800    |
|   |   | 국비  | -         | 200   | 200   | 200   | 200   | 800    |
|   |   | 지방비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  | 자부담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<과제3-3><br>뉴시타운 조성                      | 소계  | 50        | 1,000 | 2,000 | 2,000 | 2,000 | 7,050  |
|   |   | 국비  | 50        | 500   | 1,000 | 1,000 | 1,000 | 3,550  |
|   |   | 지방비 | -         | 500   | 1,000 | 1,000 | 1,000 | 3,500  |
|   |   | 자부담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[분야 4]<br>수출진흥·<br>관광산업화를<br>통한 뉴시산업<br>육성    | <과제4-1><br>환경친화적<br>뉴시도구 개발 및<br>인증제 도입 | 소계  | 100       | 100   | 100   | 100   | 100   | 500    |
|   |   | 국비  | 100       | 100   | 100   | 100   | 100   | 500    |
|   |   | 지방비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  | 자부담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<과제4-2><br>박람회 참가 지원                    | 소계  | -         | 200   | 200   | 200   | 200   | 800    |
|   |   | 국비  | -         | 100   | 100   | 100   | 100   | 400    |
|   |   | 지방비 | -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  |   | 자부담 | -         | 100   | 100   | 100   | 100   | 400    |

## VIII. 실천 계획(Action Plan)

| 일 정   |     | 실천 과제   |
|-------|-----|---|
| 2014년 | 상반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2014년 낚시진흥시행계획 수립</li> <li>○낚시 관계 단체 워크숍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자체, 해경, 관련 단체 참여</li> </ul> </li> <li>○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, 유해 낚시도구 기준 개정 등</li> </ul> </li> <li>○제1기 낚시명예감시원 출범</li> <li>○제1차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시행</li> <li>○2015년 신규 예산 확보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·홍보 프로그램 운영(과제 2-1, 신규)</li> <li>- 낚시명예감시원 활동지원(과제 2-2, 신규)</li> <li>- 낚시정보종합포털 유지·보수(과제 2-3, 계속)</li> <li>- 낚시 인프라 구축 사업(과제 3-1, 신규)</li> <li>- 우수낚시터 지원 사업(과제 3-2, 신규)</li> <li>- 낚시타운 조성 사업(과제 3-3, 신규)</li> <li>- 환경친화적 낚시도구 개발 지원 사업(과제 4-1, 계속)</li> <li>- 낚시 용품 발전 지원(과제 4-2, 신규)</li> </ul> </li> <li>○낚시누리 모바일 앱 구축</li> <li>○제1차 우수낚시터 지정</li> <li>○낚시관리제 도입 여부 관련 의견수렴 실시</li> <li>○정책 연구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낚시관리제 신설 필요성, 낚시터 수질기준 마련, 낚시타운 조성</li> </ul> </li> <li>○유어정책과 신설 추진(안전행정부)</li> </ul> |
|       | 하반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(양식산업과)</li> <li>○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사이버강의 실시(시범사업)</li> <li>○지자체 대상 컨설팅 사업 실시(어촌어항협회)</li> <li>○낚시관리제 도입 여부·방안 보고</li> </ul>   |
| 2015년 | 상반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2015년 낚시진흥시행계획 수립</li> <li>○낚시누리 콘텐츠 보강</li> <li>○낚시 인프라 구축 사업 실시</li> <li>○낚시타운 조성 시범사업 실시</li> <li>○친환경 낚시도구 인증제도 도입</li> <li>○낚시 박람회 참가 및 개최 지원</li> </ul>   |
|       | 하반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(농림축산식품부)</li> </ul>   |
| 2016년 | 상반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2016년 낚시진흥시행계획 수립</li> </ul>  |
|       | 하반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낚시타운 조성계획 수립</li> </ul>   |
| 2017년 | 상반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2017년 낚시진흥시행계획 수립</li> </ul>  |
|       | 하반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낚시관리제 도입 관련 법 개정 추진</li> </ul>  |
| 2018년 | 상반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2018년 낚시진흥시행계획 수립</li> </ul>  |
|       | 하반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제2차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</li> </ul>  |